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5. 9 (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6. 22(목)
- 다. 상정일자 : 2005. 6. 22(목) 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6.22)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가.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하여 평창군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정수(제2조)
 -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가.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2005.12.23 제정, 법률 제7739호) 제정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학대나 구금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평창군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읍면별 정수를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2명씩의 복지위원을 위촉,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 자 등에게 선도 및 상담실시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로서
-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 동계올림픽 유치시 인구유입에 따른 복지위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년 6월 22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군내 인구유입으로 인해 읍면별 복지위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나. 이에 적정한 복지위원 운영을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 다.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 가. 안 제2조중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각 2내지 3인으로 한다"로 수정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년 6월 22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진부면은 각 3인"을 "각 2내지 3인"
으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복지위원의 정수)</p> <p>-----</p> <p>-----<u>각 2인으로 하되,</u></p> <p><u>평창읍·진부면은 각</u></p> <p><u>3인</u>-----.</p>	<p>제2조(복지위원의 정수)</p> <p>-----</p> <p>-----<u>각 2내지 3인</u>-----.</p>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제출년월일 : 200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하여 평창군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의 정수(제2조)

○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 내지 3인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실시(3.2 - 3.23) 결과,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위원의 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내지 3인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